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63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원고는 2006. 3. 8. D에게 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한도대출을 해주었고, 그 후 한도를 20,000,000원으로 축소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위 한도대출 채권은 2019. 5. 22. 기준으로 20,095,160원이다.

○ 원고는 2009. 4. 29.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D은 2019. 3. 26.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은 2019. 5. 22. 기준으로 4,786,851원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D은 2019. 4.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 피고는 2019.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D의 이혼

○ 피고는 1986. 1. 28. D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2019. 5. 13.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D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D의 부정행위로 이혼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D이 원고에 대하여 한도대출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3,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 15, 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1986. 1. 28.부터 2019. 5. 13.까지 약 33년에 이르고, D이 2016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D이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D은 피고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1985. 12. 16.부터 2018. 9. 30.까지 약 33년 동안 F에 재직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고(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 1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퇴직금(중간정산 포함)으로 합계 137,612,450원(= 2016. 10. 14.자 중간정산퇴직금 130,074,990원 + 2017. 10. 13.자 중간정산퇴직금 7,300,760원 + 2018. 10. 12.자 정년퇴직금 236,7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와 D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③ 피고는 1995. 1. 12.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고, 2006. 3. 1.부터 2014. 12. 31.까지 담양군 보건소장이 운영하는 H교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 1.부터 2018. 12.까지 I 공방에서 근무하였다(I 공방에서 수령한 급여 합계 : 약 74,880,000원).

④ 피고는 2016. 6. 위암 수술을 받아 이혼 당시 경제 활동을 하기 곤란하고 요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혼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D은 이혼 이후 거주지를 옮기고 J로부터 전남 장성군 K, L 토지 2,591㎡를 연 임대료 3,000,000원에 임차하여 경작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D은 월 1,488,02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피고가 이혼에 따라 위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을 청구한 바는 없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의 가액은 138,251,000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36,000,00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액은 1억 원 정도이다.

⑥ 원고는 피고와 D의 분할대상 재산이 별지 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별지 표 기재 D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별지 표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청주시 흥덕구 M 외 2필지 지상 N아파트 O호)이 실질적으로 피고와 D의 공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5. 위암 발병에 따른 보험금 27,040,000을 수령하여 2017. 9. 27. 위 아파트를 2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1. 전남 담양군 P 대 549㎡

2. 전남 담양군 P

조적조 아스팔트씽글지붕 단층 주택 99.8㎡, 끝.

표

			재산의 표시	시가 또는 잔액(원)	요증
소 외	재 산	1	부동산-임대금 [] 토지 및 건물(여 사건 부동산 개 별주택가치의 150%로 산정)	138,251,000원	갑9-19
		2	자동차- [] 1992년식 현대스우포 승용 소형	449,503원	갑9-3, 갑9-4
		3	자동차- [] 2008년식 현대쏘나타 승용중형(소외 [] 차공용50%)	1,133,890원	갑9-5, 갑9-6
		4	자동차- [] 2008년식 현대그랜저 승용 대형(소외 [] 차공용50%)	2,033,304원	갑9-7, 갑9-8
		5	자동차- [] 2019년식 현대포터 II 화물 소형(피고차공용50%)	9,000,000원	갑9-9, 갑9-10
	소 계			150,867,777원	
	채 무	1	채권자 원고-아이너스통장대출 원리금	20,095,160원	갑9-13
		2	채권자 원고-원용카드이용대금채무	4,987,280원	갑9-14
		3	채권자 원고-여 사건 부동산담보대출금	30,000,000원	갑9-13
		4	채권자 [] 은행	36,900,000원	갑9-15
		5	채권자 [] 은행		
		6	채권자 [] 카드-특정일지정물가, 2019.07.14. 기준 2,791,017원, 원금반영	2,118,576원	갑9-16
		7	채권자 [] 카드		
		8	채권자 [] 은행	45,018,912원	갑9-17
		9	채권자 [] 은행-특정일지정물가, 2019.11.27. 기준 8,906,596원, 원금반영	8,728,374원	갑9-18
	소 계			147,849,292원	
	소외 [] 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3,018,485원	
피 고	재 산	1	부동산-경주시 용덕구 [] 제 2필지 [] 아파트 [] 호	27,000,000원	갑10-3, 갑10-4
		2	자동차- [] 2019년식 현대포터 II 화물 소형(소외 [] 차공용50%)	9,000,000원	갑10-5, 갑10-6
		3	보 험- [] 지아보험 [] 계약환급금	0원	갑10-10
		4	보 험- [] 은원저보험 [] 계약환급금	0원	갑10-10
		5	보 험- [] [] 보험 계약환급금	1,727,700원	갑10-8
		6	보 험- [] [] 보험 계약환급금	3,252,850원	갑10-9
	소 계			40,980,550원	
	채 무	1			
		2			
		3			
	소 계			0원	
	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40,980,550원	
	소외 [] 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44,000,045원	

